

의안번호	2204411
의 퇴 인	맹성규 의원
회 답 일	2024. 11. 7.
추 계 번호	24B404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하자차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의 분쟁 해결 제도로 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정 관련 회의 개최 등을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8억 5,000만원(연평균 1억 7,000만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조정제도 도입 (안 제47조의13)	170	170	170	170	170	850	170

주: 1. 최근 4년간 중재 신청 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수리·보상에 이른 건수 및 중재가 취하된 건수를 향후 조정 신청 예상 건수로 보고, 조정 1건당 조정 심리를 1회 개최한다고 가정하며, 최근 4년간 중재 심리 1회당 집행 단가가 향후 조정 심리 단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조정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7조의13(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 조정 등) 신설	하자차량소유자 또는 자동차제작자등은 제47조의4제1항1)에 따른 중재절차가 개시된 이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분쟁의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함(제5항) 제5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6항)	재량규정

1)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7조의13(자동차안전·하 자의 분쟁조정 등) 신설	○	최근 4년간 중재신청 건수 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교 환·환불 또는 보상·수리를 받은 건수 등을 기준으로 중 재 관련 회의 건당 평균 단가를 적용해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하자차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 사이의 자동차하자 관련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해 현행 중재제도 외에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조정 신청 건에 대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조정업무 처리 비용
등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최근 4년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부²⁾ 평
균 업무를 기준으로 중재신청 건수 중 판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
의에 의해 교환·환불 또는 보상·수리가 이루어진 건수 및 중재가 취하
된 건수를 개정안에 따른 조정 신청 예상 건수로 가정하고, 중재 1건
당 중재 심리를 1회 개최한다고 가정하여 최근 4년간 중재 관련 회의
평균 단가를 적용³⁾하여 추계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2.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교환·환불중재를 신청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환·환불중재 규정을 수락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9(중재부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는 3명의 위
원으로 구성된 중재부에서 한다.

3) 현재 중재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정부도 위원 3
명으로 구성할 예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자동차안전·하자의 분쟁 해결 절차로 조정제도 도입(안 제47조의13 신설)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중재절차 개시 후 당사자가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절차를 재개하도록 하는 것임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부에 신청된 중재 건수는 총 2,320건이었고, 이중 교환, 환불, 보상·수리 등이 982건, 각하 757건, 취하 422건 등이었음
 - 향후 조정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기존 중재 신청 건 중 중재 절차인 판정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교환(277건)·환불(285건)을 받고 취하되거나, 교환·환불 대신 보상·수리(441건)를 받아 종료된 건 및 중재가 취하된 건⁴⁾(422건) 등이 조정제도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예상(4년간 1,375건)

[표 2] 최근 4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부 업무 현황

(단위: 건)

연도	신청 건수	종료 건수	중재 종료 유형							
			교환		환불		보상·수리	요건미충족 등 각하	기각	취하
			판정	합의 취하	판정	합의 취하				
2021	707	828	－	44	4	67	186	295	78	154
2022	444	550	5	49	1	37	120	169	57	112
2023	533	466	7	53	3	83	61	146	35	78
2024 (~9월)	636	546	3	81	6	98	74	147	59	78
계	2,320	2,390	15	227	14	285	441	757	229	422
			242		299					

자료: 국토교통부

-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 및 중재 사건별 위원 지급 수당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

4)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재 취하 신청서에 교환, 환불, 보상, 수리 등 취하 사유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유 기재 없이 취하한 건 및 기타 사유에 체크한 건을 별도의 ‘취하’ 항목으로 통계를 잡음

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며,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부의 운영비는 회의참석 수당, 중재 수당 등이 있음

[표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수당 단가

구 분	단가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 회의참석 수당 :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 안전검토 수당 : 건당 50,000원 ○ 주심수당 : 최초 안전 100,000원, 두 번째 안전부터 건당 50,000원 - 주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안전검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중재부	○ 회의참석 수당 :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 중재 수당			
	중재심리 및 사실관계 확인	현지조사	중재판정서검토	중재판정서작성
	150,000원	150,000원×일수	50,000원	100,000원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건수 중 중재 관련 회의(이하 “중재심리”라 함) 개최 건수는 1,405건이었고 회의 1회당 평균 집행 예산은 901,000원이었음

[표 4] 최근 4년간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관련 회의 개최 건수 및 집행액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9월)	평균
중재신청 건수	707건	444건	533건	636건	580건
심리횟수	429회	333회	266회	377회	351회
심리 진행율 (신청건수 대비)	60.7%	75%	49.9%	59.2%	60.1%
심리 관련 예산	403,643천원	296,679천원	232,888천원	333,014천원	316,556천원
심리 1회당 예산	941천원	890천원	876천원	883천원	901천원

주 1. 신청인 등이 중재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4년간 중재신청 건수의 약 60%에 대하여 중재 심리 실시

2. 심리 1회당 예산은 참석 위원 교통비, 출장비 등에 따라 다소 상이(4년간 회당 평균 901천원)

자료: 국토교통부

- 최근 4년간 중재 신청 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수리·보상된 건수 및 중재 취하 건수를 향후 조정 신청 예상 건수로 보고, 조정 건수 1건당 조정

심리를 1회 개최⁵⁾하며, 최근 4년간 중재 심리 1회당 예산이 향후 조정 심리 단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면⁶⁾, 하자차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의 분쟁 해결 제도로 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조정관련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재정소요는 매년 3억 904만원 등 향후 5년간 15억 4,520만원으로 추정

- 343건(최근 4년 연평균 합의에 의한 중재종료 건수 및 취하 건수, 1,375건/4년) × 901천원(최근 4년 중재 심리 1회당 평균 소요 비용) = 309,043천원/연

○ 다만, 본 추계에서는 중재 신청 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수리·보상되는 건수 및 중재 취하 건수를 향후 조정 신청 예상 건수로 보았으므로, 향후 해당 건수에 대한 중재심리 횟수 만큼 기존 중재 심리횟수에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면, 하자차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등의 중재관련 회의 개최 등에 매년 1억 3,875만원 등 향후 5년간 6억 9,375만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

- 154회(최근 4년 연평균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수리·보상에 이른 건수 또는 취하 건수에 대한 총 심리횟수, 618회/4년) × 901천원(최근 4년 중재 심리 1회당 평균 소요 비용) = 138,754천원/연

[표 5] 최근 4년(2021~2024.9.) 심리횟수별 합의에 의한 교환·환불·수리·보상 또는 취하 건수

심리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수리·보상	707건	138건	71건	23건	12건	2건	-	-	953건
취하	303건	60건	38건	14건	4건	2건	-	1건	422건
총 심리 횟수	0회	198회	218회	111회	64회	20회	0회	7회	618회

자료: 국토교통부

- 5) 중재의 경우 중재 신청인이 중재 심리 없이 중재를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 중재 1건에 2~7회 중재 심리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조정 절차가 도입되면 중재에 비해 당사자들이 느끼는 부담감 등이 달라 조정 1건당 조정 심리 개최 횟수가 중재의 경우와는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따라 본 추계에서는 조정 1건당 조정 심리 1회가 개최될 것으로 가정함
- 6) 현재 중재부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조정부도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예정임에 따라 회의참석 및 안건검토 수당 등은 중재와 조정의 경우 유사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하자차량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들의 분쟁해결 제도로 조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1억 7,029만원 등 향후 5년간 8억 5,145만원으로 추정
 - 3억 904만원(매년 조정 관련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재정 소요) - 1억 3,875만원(매년 중재 관련 회의 개최 등에 감소될 재정 소요) = 1억 7,029만원/연

[표 6] 자동차 하자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 도입 시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조정제도 도입	170	170	170	170	170	850	170

주: 1. 최근 4년간 중재 신청 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수리·보상에 이른 건수 및 중재가 취하된 건수를 향후 조정 신청 예상 건수로 보고, 조정 1건당 조정 심리를 1회 개최한다고 가정하며, 최근 4년간 중재 심리 1회당 집행 단가가 향후 조정 심리 단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조정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최근 4년간 중재 신청 후 합의에 의해 교환·환불·수리·보상에 이른 건수 및 중재가 취하된 건수를 향후 조정 신청 예상 건수로 보고, 조정 1건당 조정 심리를 1회 개최한다고 가정하며, 최근 4년간 중재 심리 1회당 집행 단가가 향후 조정 심리 단가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조정 신청 건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